

○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-6호(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중 정정)

관보 제20627호(2023. 11. 17.)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-65호(「화학물질
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1월 12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관보 내용	가. 유독물질									
	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 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 수	UN No.
항목				구분	그림문자	신호 어	유해·위 험문구			
97-1-119	비소 [Arsenic]	7440- 38-2	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흡입(3.1) 발암성(3.6) 특정 표적장기 독성·반복 노출(3.9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3 1A 1 1 1	GHS05 GHS06 GHS08 GHS09	위험	H301 H331 H318 H350 H372 H400 H410	-	1558	
정정 사항	가. 유독물질									
	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 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 수	UN No.
항목				구분	그림문자	신호 어	유해·위 험문구			
97-1-119	비소 [Arsenic]	7440- 38-2	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흡입(3.1) 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 발암성(3.6) 특정 표적장기 독성·반복 노출(3.9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3 1 1A 1 1 1	GHS05 GHS06 GHS08 GHS09	위험	H301 H331 H318 H350 H372 H400 H410	-	1558	
비고	관보 제20627호(2023. 11. 17.) 4쪽, 표 6번째 행, 고유번호 97-1-119란 비소[Arsenic]의 유해성 분류(Code) 항목 “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”과 구분 “1” (누락된 내용)추가									